

장애인복지과

□ 신규시책

- 1. 장애인주차 상습위반 예방사업 50

□ 계속·연례반복 사업

- 2. 장애인 활동지원 52
- 3.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수당 시 추가 지원 53
- 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54
- 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55
- 6. 발달장애인 재활 지원 56
- 7.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57
- 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58

1. 장애인주차 상습위반 예방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 상습 위반으로 인한 신고다발구역에 특수재질의 불법주정차 예방용바닥스티커를 부착하여 집중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2.
- 사업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선 침범, 빗금 침범, 이중주차, 표지 부당사용 등 신고다발구역
- 사업내용: 주차위반 계도용 바닥스티커 제작(500개)
 ※ 안전신문고를 통해 연간 5천 건 이상의 위반 신고 접수

□ 필요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지역에 계도용 주차라인 바닥스티커를 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및 장애인 이동권·사회참여 증진

세부사항	제작안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재질 바닥스티커 (알루미늄 은박, 우레탄 재질) - 사이즈 40×40cm (계도용 바닥스티커) 	

□ 소요예산

- 6,000천원(시비 100%)
 - 불법주정차예방용 바닥스티커 12,000원*500개=6,000,000원

□ **추진계획**

- 2026. 1.~12. 스티커 제작 및 신고다발구역에 바닥스티커 부착

□ **기대효과**

- 상습위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위반행위 감소

2. 장애인 활동지원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방문 목욕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상담 제공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188명
- 제공기관
 - 활동보조: 4개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 방문목욕: 1개소 (사랑재가센터)
 - 방문간호: 2개소 (연희통합복지센터, 더연세간호요양통합센터)

□ 추진계획

- 분기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예탁
- 연 1회 이상 제공기관 지도·점검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상시)
- 재원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102,085	23,685	24,869	26,113	27,418
국비	71,459	16,579	17,408	18,279	19,193
도비	6,124	1,421	1,492	1,566	1,645
시비	24,499	5,684	5,968	6,267	6,580

3.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근로 의욕 고취
-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연계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가산수당 대상인 최중증 장애인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대상을 제외한 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 제공 활동지원사
- 지원단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대비 70% 가산수당 지급 (시간당 2,100원, 심야 또는 공휴일 3,150원)
- 사업비: 295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지원내역: 178,049천원, 97명('25. 8. 기준)
- 제공기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 추진계획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한 대상자 선정(매월)
- 연 1회 이상 제공기관 지도·점검
- 재원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1,225	295	295	310	325
국비	-	-	-	-	-
도비	-	-	-	-	-
시비	1,225	295	295	310	325

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 입소자 및 이용자 복지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단위: 개소)

합계	생활시설(14)			이용시설(15)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29	6	2	6	2	4	7	1	1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추진계획

-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재원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비율
총계		21,479	7,843	672	12,964	
생활 시설	소계	13,040	7,843	672	4,525	
	거주시설	11,209	7,843	672	2,694	국 70%, 도 6%, 시 24%
	단기거주시설	1,464			1,464	시 100%
	공동생활가정	367			367	시 100%
이용 시설	소계	8,439			8,439	
	복지관	3,166			3,166	시 100%
	주간이용시설	1,727			1,727	시 100%
	직업재활시설	2,855			2,855	시 100%
	생활이동지원센터	324			324	시 100%
	수어통역센터	367			367	시 100%

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장애인연금	만18세이상 등록된 <u>중증장애인</u>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전 1급~2급, 3급 중복장애)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수급자</u> 또는 <u>차상위 계층</u>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u>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u> (중전 3급~6급)

□ 지원 인원 및 금액

[2025. 6. 30.. 기준]

구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월)		
장애인연금		2,605	기초생활수급자	432,510	
			차상위	18~64세	422,510
				65세 이상	80,000
			차상위 초과자	18~64세	372,510
65세 이상	50,000				
장애수당	만18세 이상	3,154	기초 및 차상위	60,000	
			보장시설 수급자	30,000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160	기초 중증	220,000	
			차상위 중증	170,000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10,000	
			보장시설 중증	90,000	
보장시설 경증	30,000				

□ 추진계획

- 누락서비스 대상자 일제 정비를 통한 대상자 발굴

6. 발달장애인 재활 지원

-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재활, 부모상담 등 바우처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분야	서비스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인지, 소통, 행동 기능향상 서비스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지원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재활 지원 수급자: 1,672명 / 제공기관 49개소

□ 추진계획

- 분기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예탁
- 연 1회 이상 제공기관 지도·점검
- 재원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27,170	6,176	6,660	6,992	7,342
국비	19,024	4,324	4,664	4,896	5,140
도비	1,630	371	399	419	441
시비	6,5616	1,481	1,597	1,677	1,761

7.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활동 지원으로 자립생활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업비: 3,173백만 원(국 51%, 도 12%, 시 37%)

□ 추진상황

구분		수행기관	배치 및 근무내용	인원(명)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원주시 직접수행	읍면동,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행정, 복지 서비스 지원	47
	시간제			19
복지일자리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사무보조 및 환경정비 등	8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	경로당 35개소 안마서비스 제공	2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연세로알요양원 외 6개소	16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참여 공익형, 인식개선 활동, 자아실현 창작형사업	15
합계				197

□ 추진계획

- 2025. 10.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및 수행기관 공개모집
- 2026. 1.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 및 기본교육 실시
- 재원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9,519	3,173	3,173	3,173	3,173
국비	4,752	1,584	1,584	1,584	1,584
도비	1,161	387	387	387	387
시비	3,606	1,202	1,202	1,202	1,202

8.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 지원체계 구축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사업대상
 - 신청자격: 18세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대일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보강과 전문인력 지원하여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최종증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선정조사 의뢰
- 제공기관 보조금 등 교부·정산(월별 및 분기별)
- 제공기관 모니터링(점검): 연 1회(필요시 수시)

□ 기대효과

-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강화
- 최종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로 일상이 있는 삶의 질 향상

□ 소요예산

○ 1,189백만 원

- 주간 그룹형 일대일: 901백만 원(국비 70%, 도비 6%, 시비 24%)

- 주간 개별 일대일: 288백만 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계	3,707	1,189	1,218	1,252	1,285
국비	2,386	775	795	816	838
도비	262	83	84	87	89
시비	1,059	331	339	349	358